

대학원 전과(소속변경) 운영 시행세칙

[개정 2023.8.1.]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전과(소속변경)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과 허용 범위) ① 전과(소속변경)는 석사과정에 한하여 허용하며, 동일 계열 간 전과(소속변경)만 허용한다.

② 전과(소속변경)는 2번째 학기 또는 3번째 학기 개시 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③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간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.

④ 학·석사연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전과(소속변경)를 할 수 없다.

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임교원이 종전 학과에서 지도하는 대학원 학생에 한하여 변경된 소속 학과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3.8.1.>

⑥ 각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소속 대학원 내에서 학생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23.8.1.>

제3조(전과 시행시기) 전과(소속변경) 시기는 매학기 개강 20일 전까지로 한다.

제4조(전과 절차 및 제출 서류) 전과(소속변경)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다음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전과(소속변경)신청서
2. 성적증명서

제5조(학점이수) 전과(소속변경) 후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 과목 및 공통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적 및 기타) ① 전과(소속변경) 한 자의 재학 연한 및 학적 변동사항(휴학, 복학, 학사경고, 등)은 종전의 재학 연한 및 학적변동사항을 통산한다.

② 전과(소속변경)가 허가된 휴학생이 당해 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전과 허가를 취소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